

1. 개정이유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및 재지정 기간 확대를 통해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09호, 2025. 4. 8. 공포, 해당 조문 2025. 10. 9. 시행)됨에 따라, 내용수정신고가 면제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 시 제출의무 서류를 축소 하며, 지정요건 완화를 위해 새로 추가된 자본금 요건에 대한 기준금액을 설정함과 동시에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라 연계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1조제5항의 내용수정신고가 면제되는 ‘경미한 사항’ 구체화
(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기준 완화

- 1)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서’ 제출의무 삭제
(안 제9조의3제1항제2호·제7항, 별지 제23호, 별지 제24호)
- 2) 법 제21조의2제2항제1호가목 개정에 따라, 추가된 자본금 요건에 대한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설정(안 제9조의4제1항)
- 3) 법 제21조의6제2항 개정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희망하는 재지정기간 기재란을 3년 이내 → 5년 이내로 변경(안 별지 제24호)

다.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른 연계 조항 정비(안 제9조의2제4항·제5항,
제9조의4제5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협의 예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본문 중 “전단”을 “전단, 제6항 및 제8항”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로 한정하며, 내용수정 없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을 “법 제2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제2호 중 “법 제21조제5항 후단”을 “법 제21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법 제21조제5항”을 “법 제21조제5항, 제6항, 제8항”으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5항 후단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다만, 게임물내용정보 중 사행성과 관련된 내용수정은 제외한다)

1. 게임물의 실질적인 내용수정 없이 오류를 수정하거나 기술적으로 보완·개선하는 경우
2. 게임 내 시스템, 캐릭터, 아이템, 배경, 시나리오, 영상 등의 수정사항이 기존 등급분류 결정 및 게임물내용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3.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일반게임제공업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에서
게임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임기기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제1호·제2호”
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1천만원”을 “매출액 1천만원 또는 자본금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5항부터 제8
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란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희망하는 지정기간란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서식 제3호부터 제
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u>법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라 등 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로 한정하 며, 내용수정 없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 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u> 하려는 자는 관리위원회규정 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수정내용 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 다. 다만,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시스템(이하 “등 급분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 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자는 관리위 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내용을 등급분류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 <u>전단, 제6항 및 제8항</u> ----- --- <u>법 제21조제5항 후단에 따 라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 하는 경우는 -----</u>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② <u>법 제21조제5항 후단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다</u>

<신 설>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그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등급재분류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

만, 게임물내용정보 중 사행성과 관련된 내용수정은 제외한다)

1. 게임물의 실질적인 내용수정 없이 오류를 수정하거나 기술적으로 보완·개선하는 경우

2. 게임 내 시스템, 캐릭터, 아이템, 배경, 시나리오, 영상 등의 수정사항이 기존 등급분류 결정 및 게임물내용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3.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일반 게임제공업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에서 게임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임기기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④ -----

-----.

1. (현행과 같음)
2. -----

도로 수정된 경우로서 법 제2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내용수정으로 신고된 게임물이 그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 게임이용자의 게임 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

----- 법 제2

1조제7항-----

-----.

⑤ -----

----- 법 제21

조제5항, 제6항, 제8항-----

-----.

-----.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① --

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
2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
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생략)

2.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서

3. 4. (생략)

② ~ ⑥ (생략)

⑦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
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항
제1호·제3호의 계획서 작성 등
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① 법 제21조의2제2
항제1호가목에서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
천만원을 말한다.

② ~ ④ (생략)

⑤ 법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제1항제1호 -----

-----.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① -----

----- 매
출액 1천만원 또는 자본금 1억
원-----.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따른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이하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이라 한다)은 관리위원회의 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연계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 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사. (생략) 2.·3. (생략) ⑥·⑦ (생략)	----- ----- ----- ----- ----- ----- 1. ----- ----- ----- --- 제5항부터 제8항----- ----- --- 가. ~ 사.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2442